

네이버 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제정 2022. 4.

개정 2024. 11.

NAVER

제1장 일반원칙

제1조 (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이하 ‘**CP규정**’이라 한다)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라 한다)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네이버의 준법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CP규정은 네이버 소속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본 규정에 반하는 네이버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조 (용어 정의)

CP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어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시스템을 의미한다.
2.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기준 등을 의미한다.
4.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네이버의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의 보고, 세부적인 심의, 필요한 조치의 통지 또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기업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 최고경영자가 추천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임명한다.
6. 컴플라이언스부서는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7. 쟁점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관련 쟁점이 많은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8. 임직원은 고용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네이버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의미한다.
9. 제재 조치는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CP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10. 자율준수편람은 기업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 서비스별 공정거래 리스크 유형 및 유형별 서비스 운영 기준과 절차, 사례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11. 사전업무협의제도는 회사의 임직원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수립·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등을 위하여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사전업무협의체와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2. 인센티브는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기업, 고객, 협력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

제4조 (최고경영자의 의무)

- ①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기업 운영의 핵심 정책임을 선언,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부서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 ① 최고경영자는 CP 운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
-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추천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④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

제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① 최고경영자와 이사회는 각각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지식이 풍부하거나 CP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추천 및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을 받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임명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쟁점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한

2.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위원회 회부 요구 권한
4. 기타 CP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으로써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제8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P 실천목표 및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
2.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3.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4.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5.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7. 사전업무협의제도 및 협의체 점검 및 운영 참여
8.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9. 위 제8호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 진행
10.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11.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 실천 목표, 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에의 반영
12.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의 상위 보고

제9조 (컴플라이언스부서의 업무)

- ① 컴플라이언스부서 소속 직원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②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업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3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10조 (임직원의 의무)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
2. 고객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3.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 업무수행 중 확인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
4.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

제11조 (사전업무협의)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컴플라이언스부서 또는 법무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계약, 타 계열사와의 거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2. 위 제1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법무업무협의시스템(SLAM 등 사내 시스템), 전자메일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사전업무 협의 전에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컴플라이언스부서에 상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임직원은 위 협의 사항에 대해 서비스출시점검 프로세스를 등록하여 통합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제도 및 협의체의 활동 및 운영을 점검, 관리, 참여하고 필요시 최고경영자 등에 보고한다.

제12조 (내부고발)

- ① 임직원은 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내부고발 시스템에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제보하지 않거나 같이 행위를 한 경우 법 위반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3장 CP의 운영 등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13조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 ①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최고경영자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 ② 위 제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14조 (자율준수편람)

- ①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위 제1항에 따른 배포 시 쟁점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③ 컴플라이언스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 소요를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연간 교육 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 2. 교육 대상자 및 부서
 - 3. 교육 전담강사의 지정 및 역할 정의
 - 4. 교육내용 및 교재 활용 방안
 - 5. 교육의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구분 등)
 - 6. 교육성과 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 7. 연간 교육일정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쟁점이 많은 쟁점부서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컴플라이언스부서는 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네이버의 교육 지원부서의 협의 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지원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컴플라이언스부서의 요청에 응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교육 성과가 저조한 임직원 또는 법위반 임직원을 선정하여 보강 교육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임직원들의 이해수준, 교육 만족도 등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연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⑦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컴플라이언스부서가 시행한다.

제3절 내부감시체계

제16조 (내부감시체계)

- ① 기업은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1. 위험 평가
 - 2. 사전업무협의제도
 - 3. 직접보고체계
 - 4. 내부고발시스템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 (위험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쟁점사항 사실 확인을 위한 위험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1차 사전 실태조사: 부서별로 지정된 자가 컴플라이언스부서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 관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컴플라이언스부서에 보고

2. 2차 현장 심층조사: 컴플라이언스부서가 주관하여 위 제1호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내부 제보를 통하여 확인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직접 조사
- ② 위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 회차 및 기간
 2. 시행의 주체(자율준수관리자, 컴플라이언스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
 3. 평가 대상 부서(선정기준 포함)
 4. 평가 결과(사업부서별, 임직원별 등)
 5. 미비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제16조의2 (사전업무협의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 ②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위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업무협의 실적은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컴플라이언스부서 또는 법무팀 기타 사전업무협의체는 제11조에 의하여 요청받은 사전업무협의사항에 대하여 적법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뢰 받은 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등을 활용해 먼저 회신할 수 있다.

제16조의3 (직접보고체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자율준수 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최고경영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내부고발시스템)

- ① 감사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소속 임직원이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거나 참여하게 되는 경우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임직원의 제보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는 내부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부서에 적극 협조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 제18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17조 (법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 조치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요구할 수 있다. 단,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조치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컴플라이언스부서 또는 법무팀과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 2.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업무를 진행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 제1호 내지 제2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부서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제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부서가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인사 규정 또는 하위 지침 등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기업의 법 위반 예방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및 기여한 자 또는 기여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
 3. 해당연도 인사평가 시 가점
 4. 이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위반 행위 시 제재 경감 또는 면제
- ③ 기타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컴플라이언스부서가 시행한다.

제5절 효과성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제19조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제시한 실천 목표에 따라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CP 효과성 평가를 시행한다.
 1.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CP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성과
 4. CP 관련 교육성과
 5. 법 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기업에 미친 영향
 6. 컴플라이언스부서의 CP 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7. CP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8. 컴플라이언스부서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제19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 예산과 조직 운영의 변경, CP규정 개정 추진을 의결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2항에 따른 인사 제재 조치, CP 규정 개정 등 완료 시 그 결과를 기업 소속 임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21조 (문서관리)

- ① 컴플라이언스부서는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 관련 자료를 지정된 사내 업무 시스템을 통해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자문서로 게시된 자율준수편람
 - 2.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 3.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
 - 4.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 ③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위 제2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2. 4. 제정되었다.

본 규정은 2024. 11. 개정되었다.